##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83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박준태·조지연·장동혁

박충권 · 정희용 · 주호영

구자근 · 김상욱 · 고동진

이헌승 · 서명옥 · 주진우

김미애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후 약식 통보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

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49 조, 제59조, 제146조 및 제155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사를"을 "중립적으로 의사를"로, "사무를"을 "국회의 사무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의사를"을 "중립적으로 의사를"로, "사무를"을 "위원회의 사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 정한다"를 "합의하여 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으로 한다.

제1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제9호 중 "제146조를"을 "제146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하였을 때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	제10조(의장의 직무)
를 대표하고 <u>의사를</u> 정리하며,	<u>중립적으로 의사</u>
질서를 유지하고 <u>사무를</u> 감독	를 <u>를</u>
한다.	- <u>국회의 사무를</u>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의사를</u>	중립적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u>사</u>	<u>으로 의사를</u>
<u>무를</u> 감독한다.	<u>위원회의 사무를</u>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	②
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u>협의</u>	<u>합의하</u>
<u>하여 정한다</u> . <후단 신설>	여 정한다. 이 경우 합의는 위
	<u>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u>
	문서로 한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	
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	
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u>위원회의 의결이 있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생 략) <신 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수 있다.

- 1. ~ 8. (생략)
- 9. <u>제146조를</u>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 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 을 때

	<u>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u>
	<u>는</u>
	1. ~ 4. (현행과 같음)
제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
	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제	155조(징계)
	<u>.</u>
	1. ~ 8. (현행과 같음)
	9. <u>제146조제1항을</u>

<u>&lt;신 설&gt;</u>	9의2. 제1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
	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하
	<u> 였을 때</u>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